



(2017 - 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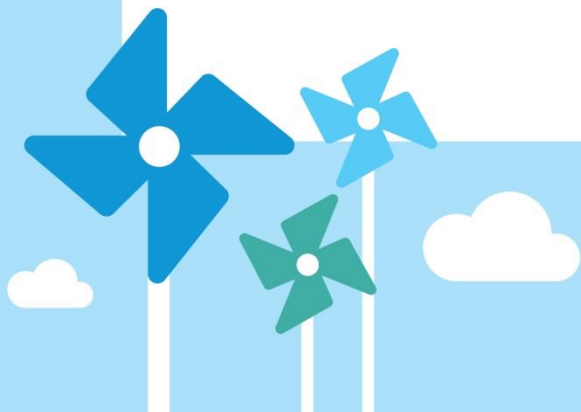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KEB 하나은행

목차 CONTENTS

1. (금융꿀팁)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
3.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4. KEB 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 Text Banking 서비스
 - 성년후견지원신탁
 - 가족배려신탁
 - 온라인 영업점 모바일브랜치 서비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1. (금융꿀팁)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제목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사례	<p>(1) 가정주부 이○○(33세)씨는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웠다.</p> <p>(2) 직장인 박○○(28세)씨는 3년 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로부터 카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얼마 후 ○○카드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하였다.</p> <p>(3) 직장인 김○○(41세)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p> <p>(4)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최○○(39세)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최씨의 매제가 전화를 대신 받자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관련사실을 말했다. 최씨는 매제가 자신의 연체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p> <p>(5) 대학생 주○○(23세)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대신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p>
꿀팁	<p>☞ 아래의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p>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대응 요령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③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④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⑤ 전화 또는 방문 ⑥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⑦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⑧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⑨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⑩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⑪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②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③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④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세 대응요령은 후술)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4)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6)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9)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요령

(1)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 불법채권추심 유형별 사례 및 소비자 대응요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ww.fss.or.kr > 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 행정지도내역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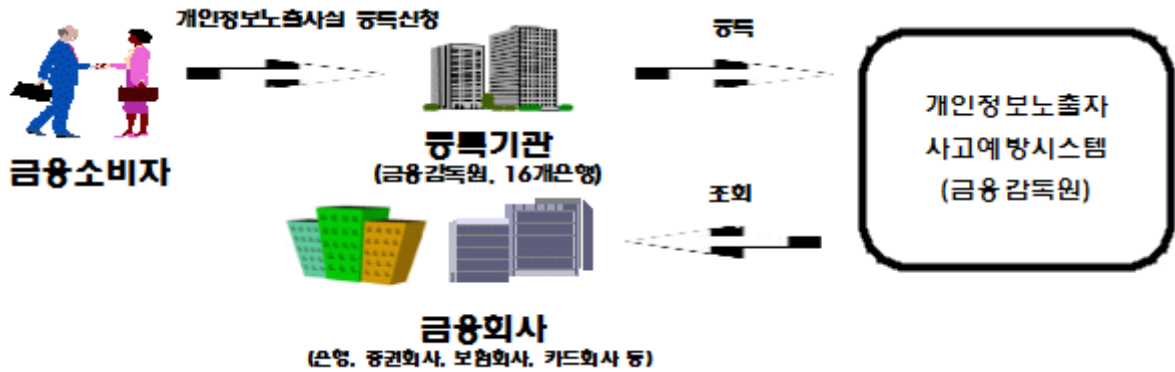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중인데,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였음에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지갑을 분실한 A가 ○○은행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B가 △△은행에서 A명의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례가 발생) 발생.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요(현행)

□ 금융감독원은 노출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구축.운영중('03.9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①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 ② (소비자) 은행(16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신청
- ③ (신청을 받은 은행) 금감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
- ④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정보를 조회, 회사 DB에 반영
- ⑤ (금융회사 영업점)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

□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금융감독원은 이용 ID 부여)하여 등록된 노출정보를 활용 중이며,

- ★ 1,101개 금융회사 중 1,055개(95.8%)가 가입(은행 16개, 금융투자회사 29개, 보험회사 33개, 저축은행 79개, 신협 874개, 카드회사 8개, 할부리스 13개, 기타 조합 3개)
- 연평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고, 10만회 이상 조회되는 등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주요 역할 수행

II.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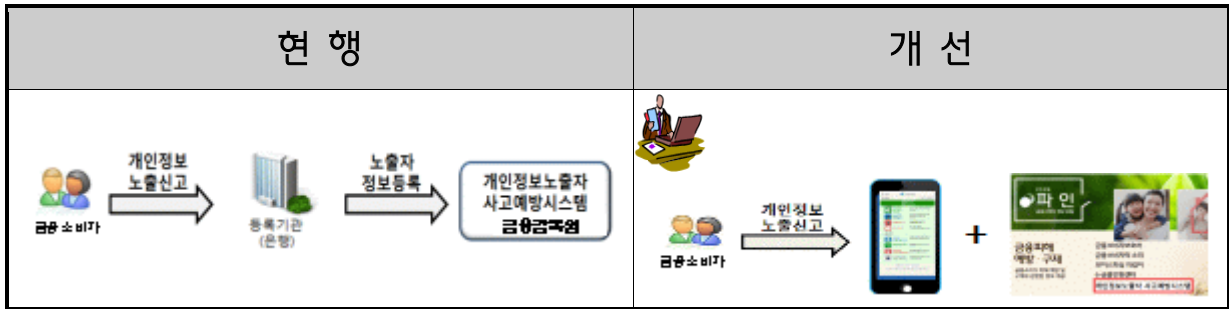
가) 「파인」을 통한 ONE-STOP 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서비스 추진

□(현행)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신청해야 하고,

-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침

□(개선)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FINE, <http://fine.fss.or.kr>)을 통해

-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17.7월부터 시행 예정)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절차

- 개인정보노출자의 파인을 이용한 등록 방법
- ① 개인용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우리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접속
 - ② 「파인」 초기화면에서 「금융피해 예방·구제」로 들어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클릭
 - ③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개인노출정보 등록

인터넷포털에서 「파인」을 검색



인터넷 주소창에 fine.fss.or.kr 입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클릭



필수입력사항을 입력



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행)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 발생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의 시스템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해당 고객은 당초 시스템 등록을 신청했던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하여 등록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이 있음

□(개선)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 보완

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실시간 공유 추진

□(현행)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하여 회사의 DB에 반영하고 있으나,

•동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time lag)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 노출

□(개선) 금융감독원「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17.10월부터 시행 예정)



라)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 확대·운영

□(현행)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문구’*를 팝업창으로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 (예)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요청 고객입니다. 본인 확인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재발급 등 명의도용 개연성이 있는 일부 금융거래에서 ‘주의문구’ 게시가 누락되어 시스템 운영상 허점*을 노출

★ ‘03.9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출범 이후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금융거래의 종류를 선정해 운용해 왔으나,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일부거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개선) 금융업권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하여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

◦ 은행(12개), 금투(7개), 보험(7개), 카드(7개), 할부리스(8개), 저축은행(9개), 신탁(24개) 이상 74개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선정

마)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 확대

□(현행)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1,101개) 중 일부(46개)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발생

★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공유하려면 금감원에 시스템 가입신청 후 ID를 받아야 함

□(개선)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회사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1,101개) 전체로 확대

Ⅲ. 추진 일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17.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7.10월부터 시행 예정

★ 다만, 할부·리스업권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융감독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한편,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 추진계획

세부과제	소관	이행시기
「파인」을 통한 ONE-STOP 노출정보 등록(해제) 서비스 추진	금융감독원	'17.7월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17.7월
개인정보 노출사실 실시간 공유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17.10월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 확대 운영	금융회사, 금융협회	'17.5월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17.5월

3.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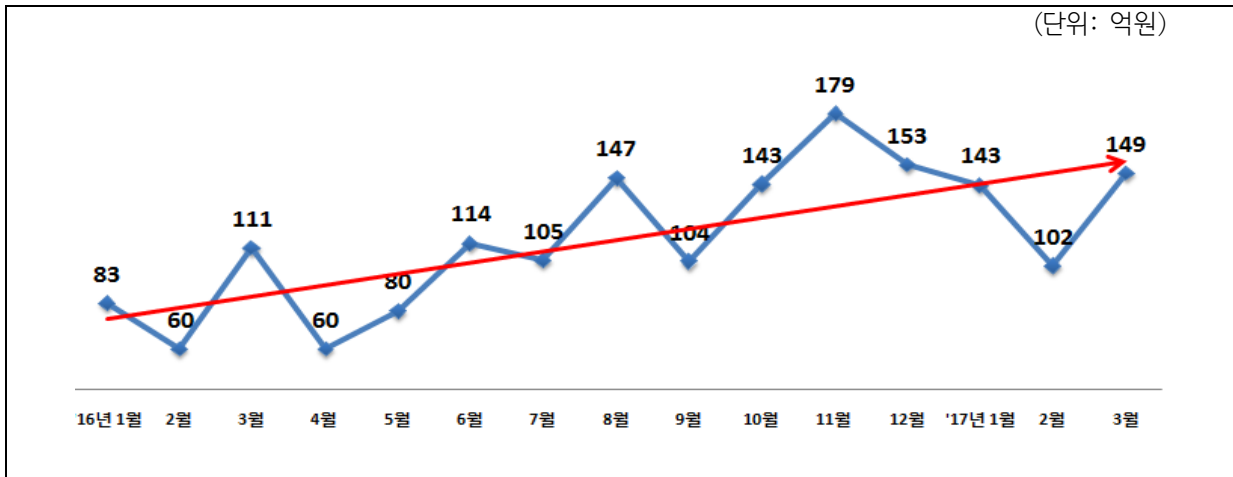
□'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22%)하였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 추세

★ 대출빙자형 피해액(전체 피해액 대비 비중) : '15년 1,045억원(42.7%) → '16년 1,340억원(69.8%)

◦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

★ '17.3월 대출빙자형 피해액(149억원)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은 69%(10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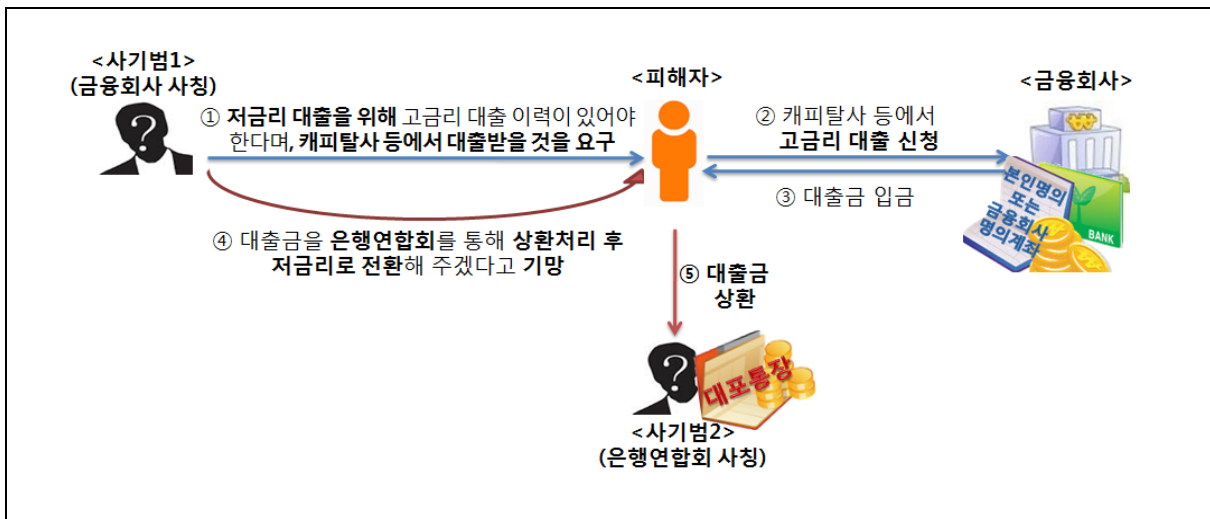
<'16년 ~ '17.3월 중 월별 대출빙자형 피해금 추이>



II. 주요 피해사례

- 가)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
-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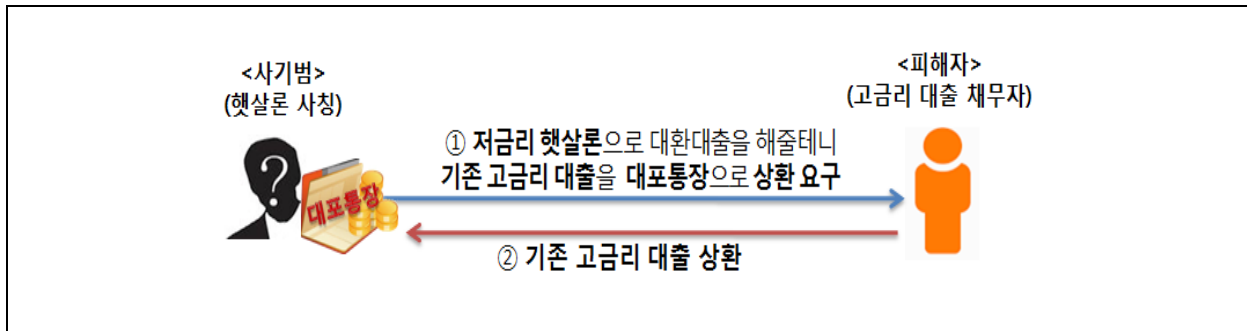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 나)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접근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III. 대출금 상환방법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대출금 상환방법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 ①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
- ②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금융회사)이 자금의 입금과 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
- ③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 (예시) 예금주: xx캐피탈,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기망하며 기존 대출금을 동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나,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며, 아울러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 ★ “114”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

4. KEB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I. KEB하나은행, 「Text Banking 서비스」

- KEB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문자 메시지(SMS)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신개념 서비스인 『Text Bank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텍스트 banking은 문자 메시지에 계좌 별칭과 송금 금액을 KEB하나은행의 대표번호로 전송하면, 즉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송금 및 잔액/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banking 로그인, 보안매체 및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Text Banking 특징!
 - 보안카드, App설치 필요없이 문자로 초고속 quick 송금
 -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 거래하는 안전함
 - 거래내역/잔액 조회도 문자 한통이면 끝
 - 2017.6.30일까지 이체수수료 한시적 전액면제
- 텍스트 banking을 이용 하여 이체 거래할 경우 기존 전자금융 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기존 스마트폰 banking과 핀테크 업체의 송금서비스 대비 간편함과 신속성이 뛰어납니다.

II. 피성년후견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서비스(성년후견지원신탁)

-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피후견인의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견인의 횡령·배임이 우려되고,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해부족으로 후견사무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EB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계약을 통해 KEB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전 등 주요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전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가족 배려 신탁

- KEB 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 상품입니다.
- KEB 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당장의 필요자금과 장례비용 등 만일의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KEB 하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들 간의 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IV. 온라인 영업점 「모바일브랜치」 서비스

하나금융그룹

방문 없GO! 앱 설치 없GO! 공인인증서 없GO!

모바일브랜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신용대출·신용카드 신청 완료!

모바일브랜치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 없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의 가상 영업점을 말합니다



특징

편리하다

- 방문 안해도 OK
- 앱 설치 안해도 OK
- KEB하나은행 거래가 없어도 OK

빠르다

-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라도 바로바로
- 로그인 및 가입절차 필요없이 신청 절차 완료
- 신용카드 신청도 3분이면 땡

간편하다

- 공인인증서 없어도 GOOD
- 증빙서류 제출도 이전 촬영으로 끝나요
- 간편한 본인확인 및 동의절차(통신사 본인인증 및 ARS 동의)

접속 방식

- 은행 직원이 손님 스마트폰으로 접속경로 전달(SMS, 톡, QR코드 등을 통해 URL 제공)
- 손님은 전달 받은 접속경로를 터치(또는 QR코드 인식)하여 모바일브랜치에 접속

제공 서비스

- 신용대출 신청, 신용(체크)카드 신청,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 신규



이런 분에게 좋아요

- 영업점 방문을 위해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 분
- KEB하나은행과 거래가 없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
-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
- 은행 신청 서류에 수기로 작성하기 귀찮으신 분
- 앱 설치에 거부감이 많으신 분
- 간편한 증빙서류 제출을 원하시는 분

본 홍보물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사인 심사필 2017-광고-1856호(2017.3.8)/CC보랜드170314-136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건강한 금융생활정보가이드

KEB 하나은행